

2006. 9. 6 (수) 10:00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 세입예산안 대비표	1
◆ 세출예산안 대비표	2
◆ 심 사 결 과	3
◆ 세출예산안 수정내역	4
◆ 세출예산안 삭감조서	5
◆ 조건부승인 조서	5
◆ 주문사항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21 거창군수
- 회 부 일 자 : 2006. 8. 22
- 의 결 일 자 : 2006. 9. 5

2. 세입예산안 대비표 (일반 + 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39,319,217	211,495,795	27,823,422	13.2
일 반 회 계	소 계	202,845,680	179,267,447	23,578,233	13.2
	지 방 세	11,564,209	11,564,209	0	0
	세 외 수 입	19,570,311	14,454,528	5,115,783	35.4
	지방교부세	105,896,658	95,860,914	10,035,744	10.5
	조정교부금	3,240,000	3,400,000	△ 160,000	△4.7
	보조금	62,574,502	53,987,796	8,586,706	15.9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19,590,265	18,004,010	1,586,255	8.8
	댐주변지역지원사업	528,700	510,000	18,700	3.7
	주 택 사 업	82,568	58,228	24,340	41.8
	농업발전 기금	6,857,076	6,290,180	566,896	9.0
	의료보호 기금	480,788	475,500	5,288	1.1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61,630	309,500	△147,870	△47.7
	농공단지조성사업	1,300,345	967,900	332,445	34.3
	수질개선 주차장 관리	9,366,187 812,971	8,723,172 669,530	643,015 143,441	7.4 21.4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소 계	16,883,272	14,224,338	2,658,934	18.7
	상수도공기업	5,364,414	5,007,114	357,300	7.1
	하수도공기업	11,518,858	9,217,224	2,301,634	25.0

3. 세출예산안 대비표 (일반 + 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39,319,217	211,495,795	27,823,422	13.2
일반 회계	소 계	202,845,680	179,267,447	23,578,233	13.2
	일반행정비	55,601,910	51,027,814	4,574,096	9.0
	사회개발비	67,913,957	57,211,457	10,702,500	18.7
	경제개발비	74,516,084	66,799,854	7,716,230	11.5
	민방위비	463,485	428,078	35,407	8.3
	지원및기타경비	4,350,244	3,800,244	550,000	14.5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19,590,265	18,004,010	1,586,255	8.8
	담주변지역지원사업	528,700	510,000	18,700	3.7
	주택사업	82,568	58,228	24,340	41.8
	농업발전기금	6,857,076	6,290,180	566,896	9.0
	의료보호 기금	480,788	475,500	5,288	1.1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61,630	309,500	△147,870	△47.7
	농공단지조성사업	1,300,345	967,900	332,445	34.3
	수질개선	9,366,187	8,723,172	643,015	7.4
	주차장 관리	812,971	669,530	143,441	21.4
공기 업 특별	소 계	16,883,272	14,224,338	2,658,934	18.7
	상수도공기업	5,364,414	5,007,114	357,300	7.1
	하수도공기업	11,518,858	9,217,224	2,301,634	25.0

4. 심 사 결 과

▣ 세입예산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출예산

○ 일반회계

- 3건 24,748천원을 삭감 조정, 2건에 646,410천원 조건부 승인
-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5. 세입예산안 수정내역 : 해당 없음

6. 세출예산안 수정내역

o 세출예산(일반 + 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요구예산액	조정액	승 인 액	비 고
합 계		239,319,217	0	239,319,217	삭감 예산 예비비 대체
일 반 회 계	소 계	202,845,680	0	202,845,680	
	일반행정비	55,601,910	감 6,000	55,595,910	
	사회개발비	67,913,957	감 18,748	67,895,209	
	경제개발비	74,516,084	0	74,516,084	
	민방위비	463,485	0	463,485	
	지원 및 기타경비	4,350,244	증 24,748	4,374,992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19,590,265	0	19,590,265	
	주담주변지역사업	528,700	0	528,700	
	주 택 사 업	82,568	0	82,568	
	농업발전기금	6,857,076	0	6,857,076	
	의료보호 기금	480,788	0	480,78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61,630	0	161,630	
	농공단지조성사업	1,300,345	0	1,300,345	
	수질개선	9,366,187	0	9,366,187	
	주차장 관리	812,971	0	812,971	
공 기 업 특 별	소 계	16,883,272	0	16,883,272	
	상수도공기업	5,364,414	0	5,364,414	
	하수도공기업	11,518,858	0	11,518,858	

7. 세출예산안 삭감조서

○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페이지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감 액	사 유	비 고
	관	항					
계			3 건		24,748		
131	일 반 행정비	재무 행정	201-01(일반운영비) 재무보고서 작성 수수료	10,000	6,000	예산 과다편성	
140	사 회 개발비	문화 및 체육	307-02(민간경상보조) 예술창작 스튜 디오 운영비	6,968	3,748	예산 과다편성	
142	“	“	307-02(민간경상보조) 한불수교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비	50,000	15,000	군비 과다계상	

8. 세출예산 조건부 승인 조서

(단위 : 천원)

회계 별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승인액	조 건 부 승인 내역	비 고
	관	항					
계			2 건	646,410	646,410		
일반 회계	일 반 행정비	자치 행정	307-02 새마을운동 우수 마을 평가 보상금	80,000	80,000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	
“	교 육 및 문화	문화 및 체육	401-01 공도장 건립사업	566,410	566,410	설계시 단가 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 감에 만전을 기하 여 집행	

9. 주문사항

■ 총무위원회 소관

- 궁도장 건립사업 566,410천원은 설계시 단가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
-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 80,000천원은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
- 소송패소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은 1차적으로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몫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청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거창사과 TV홈쇼핑 홍보

-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인 거창사과 TV홈쇼핑 방영계획에 있어 브랜드 포장지 관리 미흡으로 거창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바 생산농가, 주관단체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TV홈쇼핑에 방영,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제고

○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시 의회 사전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방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예산사전승인의 원칙”에 부합 하는바 향후에는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